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44
----------	-------

발의연월일 : 2021. 7. 16.

발 의 자 : 김 웅 · 허은아 · 윤희숙
김희국 · 유경준 · 곽상도
박대수 · 전주혜 · 신원식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

무 중 ‘범죄정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정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1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5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국가안전정보처) ①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② 국가안전정보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국가안전정보처장이 각각 승계한다.

1. 경찰청장의 소관 사무 중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2. 해양경찰청장의 소관 사무 중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국가안전정보처
해양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국가안전정보처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국가안전정보처의 행위 또는 국가안전정보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안전정보처, 국가안전정보처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3(국가안전정보처) ① 국</u> <u>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u> <u>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u> <u>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u> <u>보처를 둔다.</u> <u>② 국가안전정보처에 처장 1명</u> <u>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u> <u>장은 정무직으로 한다.</u>
<u>제22조의3(인사혁신처) (생 략)</u>	<u>제22조의4(인사혁신처) (현행 제2</u> <u>2조의3과 같음)</u>